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0.(목) 10:00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기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96호
- 나. 제 출 자 : 류명기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지원기준 및 지원액,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함

2) 안 제4조(지원 금액)

장애인가정에게 신생아 1명당 50만원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다른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 ▶ 여성장애인 : 100만원 (국비50%, 시비50%) → 보건복지부
- ▶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1~3급) : 100만원(전액시비) → 서울특별시
- ▶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4~6급): 지원없음

3) 안 제5조~ 제6조(지원신청, 지원절차)

4) 안 제7조(환수조치)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생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